

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39 |
|----------|-----|

제 출 일 : 2026. 4. 7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,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

○ 제안이유

-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 제출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- 돌봄, 숙제지도, 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프로그램, 등·하원 지원 등

3. 위탁시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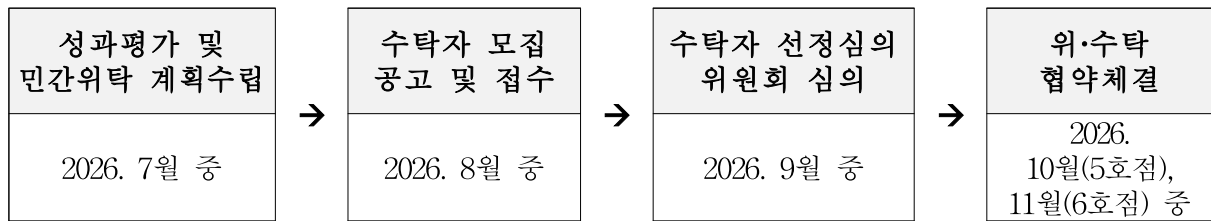
| 연번 | 구분 | 위치 | 면적(m ²) | 정원 | 現 수탁기관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재위탁 (5호점) | 순화궁로 458-58 (별내동, 별가람마을 1-8단지) | 87.78 | 20 |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김현아) |
| 2 | 재위탁 (6호점) | 별내3로 64-16 (별내동, 별내별빛마을 3-6단지) | 83.23 | 20 |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한동윤) |

4. 민간위탁 기간

| 연번 | 구분 | 설치일 | 위탁기간 | |
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기존 | 재위탁 시 |
| 1 | 5호점 | 2021.11.01. | 2021.11.01. ~ 2026.10.31.(5년) | 2026.11.01. ~ 2031.10.31.(5년) |
| 2 | 6호점 | 2021.12.01. | 2021.12.01. ~ 2026.11.30.(5년) | 2026.12.01. ~ 2031.11.30.(5년) |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선정 방식 :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
- 추진 절차

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위탁경비 : 약 150,037천원 (1개소/년)

| 산출근거 | | 합계(천원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|
| 계 | | 150,037 | |
| 인건비 | ·(기본급) 센터장 : 3,34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전일제) : 3,10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시간제) : 1,551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호봉제) 개인별 호봉 적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분 ·(명절수당) 개인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× 60% × 2회 ※ 월급여,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, 퇴직적립금 포함 | 약 123,597 | 기본인건비 + 추가인건비 (호봉적용) + 명절수당 |
| 운영비 | ·(1,530천원 × 12개월) + (500천원 × 2개월) ※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용비, 수수료, 여비 등 | 19,360 | 냉난방비 포함 |
| 돌봄 프로그램비 | ·200천원 × 12개월 | 2,400 | |
| 급식비 | ·4,500원 × 20명(아동 정원수) × 52일(방학일수) ※ (지원기준) 중식 1식 단가 9,000원의 50% 보조 | 4,680 | *방학일수(안) 겨울방학 : 35일 여름방학 : 17일 |

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| 구 분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종사자 채용, 돌봄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돌봄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○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|
| <p>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 |
| <p>경제적 효율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○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|
| <p>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·관리 가능 |
| <p>성과 측정의 용이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 ○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정당화로 자체평가 용이 |
| <p>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 점검),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|
| <p>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|
| <p>총 합 의 견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○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○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|

8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성과평가
 - 근거 :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(성과평가)
 - 대상 :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(5호점, 6호점)
 - 아동권리보장원 평가 결과 세부 점수 비공개로 7월 중 자체평가 예정
 - ※ 아동권리보장원(보건복지부) 평가 결과 ‘통과’(60점 이상 득점)

9. 기대효과

-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
-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

10. 향후계획

- 2026. 7. : 다함께돌봄센터 5, 6호점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
- 2026. 8. :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
- 2026. 9. :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
- 2026. 10. :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인수인계 및 위·수탁협약 체결
- 2026. 11. :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인수인계 및 위·수탁협약 체결

11. 붙임 자료

-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심사 기준(점수표)(안)
- 관련 법령

「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」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(안)

| 대항목 | 소항목 | 평가 항목 | 배점 |
|---|---|---|--|
| 가. 수탁자의 적격성 | A. 공신력 (10) | 1. 법인 형태와 이사회 구성 | 5 |
| | | ① 신청법인의 유형 | · 사회복지법인(2) · 기타 비영리법인(1) |
| | | ② 법인(단체) 이사회 구성 인력의 전문성 | ·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이 20%이상(3) ·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이 10%이상(2) ·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이 5%미만(1) |
| | B. 사업수행기관 재정능력 (10) | 2. 최근 3년간 법인(단체)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 * 신규법인(단체) 미해당 | ·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해당없음(5) ·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해당있음(3) |
| | | 3. 수탁사무운행을 위한 수탁기간(5년) 동안의 재정 지원계획 | · 자부담 2,500만원 이상(5) · 자부담 1,000만원 이상(4) · 자부담 1,000만원 미만(3) |
| | C. 사업능력 (10) | 4. 법인(단체)의 자산보유 현황 | · 5천 이상------(5) · 2천 이상~5천 미만-----(4) · 1천 이상~2천 미만-----(3) · 1천 미만------(2) |
| 5.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업운영 실적 * 신규법인(단체) 미해당 | | · 4회 이상 수행------(5) · 2회 이상 수행------(4) · 1회 이하 수행------(3) | |
| | | 6. 최근 3년간 아동복지 관련 표창 또는 공모사업 수상실적 * 신규법인(단체) 미해당 | · 4회 이상 수행------(5) · 2회 이상 수행------(4) · 1회 이하 수행------(3) |
| 정량평가 합계 (6개 항목) | | | 30 |
| 나.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| D. 전문성 및 운영의지 (20) | 7.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의 적합성 | 10 |
| | | ①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견해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| ② 시설 및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도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E. 시설운영계획 (30) | 8.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의 운영의지 | 10 |
| | | ① 대표자 및시설장(내정자)의 운영의지, 가치관, 성실성 등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| ② 시설장(내정자)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다. 지역사회 활성화 | F. 지역사회 연계 (20) | 9. 향후 시설 운영계획 수준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| 30 |
| | | ① 지역 수요에 대한 욕구조사 및 결과 반영 여부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| ② 비전과 목표, 중점추진과제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 여부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|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,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|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, 창의성 실행 가능성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| |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|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|
| F. 지역사회 연계 (20) | 10.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| 20 | |
| | 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, 이행가능성, 탁월 정도 | 우수(8~10), 보통(5~7), 미흡(0~4) | |
| | | ② 지역공동체 참여, 협력 여부 및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 활용계획 구체성, 타당성, 이행가능성, 탁월 정도 | 우수(8~10), 보통(5~7), 미흡(0~4) |
| 감점 사항 | | PPT 발표시간 미준수 시 적용 (PPT 발표시간 : 5분 이내) - ① 총 발표시간(5분) 준수 - ② 총 발표시간(5분) 후 3분 초과 시 감점 1점 - ③ 총 발표시간(5분) 후 5분 초과 시 감점 3점 | ① 감점없음(5분 이내) ② - 1점 (5분 초과 ~ 8분 이내) ③ - 3점 (8분 초과) |
| 정성평가 합계 (4개 항목) | | | 70 |
| 전체 합계 (10개 항목) | | | 100 |
| ※ 심사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※ 평균 점수 중 고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※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1) 시설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 2) 수탁자의 적격성 등 3) 지역사회 활성화방안 | | | |

붙임2 관련 법령 등

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7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

-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우선 근거하고, 그 밖의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○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1. 위탁기간의 변경
 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